

'87년도 의료보험협약가 관련문서 현황

일 자	발송처	수신처	내 용 요 지
4. 15	연합회	협 회	제목: 87년도 재료대 시장조사를 위한 회의 개최(실무자회의) 일시: 87. 4. 15. 장소: 연합회 8층 회의실 결과: 시장조사 일정 협의
4. 22 ~5. 4			제목: 전국 재료대 시장조사 실시 지과위원 33 종합병원 10 지과병원 5 재료상 12 (60기관)
4. 19	보사부	협 회	제목: 진료재료대 산정업무에 따른 협조요청 내용요지: 의료보험에서 별도 인정하고있는 진료재료중 수입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과 사용목적 규격 등이 동일하고 그 효능효과와 동질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87. 5. 1 일 진료분부터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되 현재 재료비용을 별도 인정하고있는 진료재료중 위와 같은 품목에 대하여는 착오없도록 조치요망.
4. 29	연합회	협 회	제목: 회의 개최(실무자회의) 내용: 치과용 진료재료대(아말감등) 인정기준 설정도의 참석자: 조석호 기획실장
4. 30	연합회	협 회	제목: 진료재료대 심사기준 등보 내용: 보사부에서 통보된대로 87. 5. 1 일 진료분부터 수입제품 아말감알로이의 재료대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현행 협약가격은 수입제품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사부의 수입제품 불인정 방침 결정에 따라 아말감 알로이의 협약가격은 자동 해지가 되는것이며, 국산 제품의 비용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귀 회와 별도 협의 후 결정하되, 적용시기는 87. 5. 1 진료분부터임.
5. 1	연합회	협 회	제목: 회의 개최 내용: 치과용 재료대(아말감 등) 인정기준 설정도의 참석자: 김정균부외과, 조호원보협이사
5. 4	협 회	보사부	제목: 진료재료대 산정업무에 따른 건의 내용: 치과용 아말감알로이의 경우 4 개업체중 1 개업체를 제외하고는 그 효능, 효과가 보사부 고시기준 및 시험법에서 부적합 재료로 판정되어 품질관리강화를 건의하였으므로 국내 생산업체가 양질의 재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치과용 아말감알로이 공동 시장조사에서 협회회원 의료기관에는 외국산 알로이를 이미 상당량 구입 비축하고 있음이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커피의 조치를 87. 7. 1 일 진료분이후로 연장조치하여 줄 것을 요망.
5. 6	협 회	연합회	제목: 의료보험진료재료대 심사기준 유보 건의 내용: 보건사회부의 의료보험재료 중 수입품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동일효능 및 성분이면 국산으로 산정등록 거시된 사항과 관련, 수입제품 불인정 결정으로 인한 아말감알로이의 협약가격 자동해지 건에 대하여는 전국 요양하급 기관에서 이미 구입 사용하고 있는 수입품재료의 진량 소모 및 홍보 기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간연장 요청공문을 보건사회부에 건의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귀회로부터 통보된 87. 5. 1 일 진료분부터 국산제품가격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사부 회신이 있을때까지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
5. 15 ~5. 22			제목: 분석작업 및 전산입력 내용: 전국시장조사자료분석 및 전산입력작업

일 자	발송처	수신처	내 용 요 지								
5. 20			제목: 협약가 유관기관 회의 일시: 87. 5. 20. 09:30 장소: 연합회 8층 회의실 참석자: 보사부, 치협, 연합회, 공단 결과: 5월 1일~31일 진료분에 대한 아말감재료대물 현행 635원으로 하는것을 전제조건으로 87. 6. 1일부터 국산아말감 1면 174원 산정하는 것으로 다음과같이 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계 조 국</th> <th>1인당당단가 수</th> <th>은</th> <th>1면당단가</th> </tr> </thead> <tbody> <tr> <td>국 산</td> <td>11,828원</td> <td>15,200원</td> <td>174원</td> </tr> </tbody> </table>	계 조 국	1인당당단가 수	은	1면당단가	국 산	11,828원	15,200원	174원
계 조 국	1인당당단가 수	은	1면당단가								
국 산	11,828원	15,200원	174원								
5. 20	협 회	연합회	제목: 아말감재료대 협약가 해지에 관한 의견 내용: 의료보험 진료재료대 협약가는 귀 회와 본 협회가 상호 합의에 계약되는 것으로서 해지전에 대해서도 협약과 마찬가지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러므로 아말감재료대 협약가를 해지하는 것은 진료수가 산정방법 제 7항의 성무협정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아말감 재료대 현행 협약가(1면 635원)는 재협약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협약가격 해지건은 귀 회의 일방적인 처사로 생각됨.								
5. 26	보사부	협 회	제목: 건의 회신 등보 내용: 요양하급기관이 보유하고있는 수입품 제고량과 국산품 협약가 산정을 위한 거래가격조사 및 협약을 위한 조정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적용시기를 87. 6. 1 진료분부터 적용토록 변경								
5. 27	연합회	협 회	제목: 아말감재료대 해지에 관한 의견회신 내용: 아말감알로이의 협약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차이가 많은 사실을 발견하고 협약성질 등을 위하여 시장조사를 준비하던 중 87. 4. 20 보사부로부터 "진료재료중 수입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과 사용목적, 규격등이 동일하고 그 효능, 효과와 동질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87. 5. 1 진료분부터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결정하였다"는 신사기준이 시달되었으며 수입제품가격 기준으로 협약된 아말감알로이의 재료대 협약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게된 것이 지 결코 본회의 일방적인 해지조치가 아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								
5. 27	협 회	연합회	제목: 치과진료용 충전재료대 협약 공문 접수 내용: 협약서 내용 첨부 송부하오니 이의가 없으면 날인하여 송부 요망								
5. 27	협 회	연합회	제목: 협약서 내용에 따른 의견 공문 발송 내용: 귀 회에서 제시된 협약서 제 3조(협약사항의 조정) 3항의 내용(차후 면담 사용량에 차이가 발견된 때에는 관련단체가 협의하여 조정한다)은 본 협회에서는 지난 5. 20일 협약을 위한 회의시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며 더욱 동 사항은 면담 174원으로 상호합의 협약을 하면서 단시조항으로 재명시하는 것은 이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동 조항을 삭제한 내용으로 협약될 수 있도록 협조바람.								
5. 27			제목: 협약 체결 내용: 협회에서 요청한 내용의 삭제 및 동조 제 1항의 내용이 약간 변경되어 협약 재요청에 따라 아말감협약가 체결								

청탁풍조 배격하여

정의사회 구현하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정화위원회

의료보험 충전재료대 아말감 가격변경

82년도부터 협약 시행되어온 1면당 635원은 보사부로부터 의료보험환자 진료에 사용되는 모든 수입재료에 대하여 국산품으로 대체토록 시달된 방침에 따라 87년 6월 1일 의료보험환자 진료분부터 국산아말감 1면당 174원으로 변경 시행됨을 홍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아말감 이외 품목에 대하여도 변경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말감 재료대 협약가 조정작업 현황

1. 82. 8. 1일 협약 및 가격 변경(현행)

제 조 국	1 온 스 당 단 가	수 은 단 가	1 면 당 협 약 가
외 국 산	43,000원	13,000원	635원

87. 6. 1일 시행(변경된 협약가)

제 조 국	1 온 스 당 단 가	수 은 단 가	1 면 당 협 약 가
국 산	11,828원	15,200원	174원

2. 85년도 재협약을 위한 전국 합동 시장조사 실시

- 가. 조사기간: 1985. 8. 19~9. 10.
- 나. 조사지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춘천
- 다. 품 목: 치과재료대 40여종 외
- 라. 참여기관: 치협, 의협, 병협, 연합회, 공단
- 마. 결 과: 인상품목에 대한 불인정으로 협약 결렬

3. 86년도 일반 병의원 재료 및 치과재료 시장조사를 위한 협약가 회의시 (86. 5. 7) 치과는 추후 조사실시하기로 함.

4. 87년도 재협약을 위한 전국 합동시장조사 실시

- 가. 조사기간: 1987. 4. 22~5. 4.
- 나. 조사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천안, 광주
- 다. 품 목: 치과의약품 및 재료 38종
- 라. 참여기관: 보사부, 치협, 연합회, 공단(2개조)

齒科 頰顔面 領域의 傷害 診斷 基準例

현 행	진단기준	개 정	진단기준	비 고
1. 경조직 가. 악골골절 1) 단순골절 2) 복잡골절 나. 치아파절 1) 발치를 요하는 예 (Root 파절) 2) 발수를 요하는 예 (Crown 파절) 다. 치아탈구(기능회복시까지) 1) 고정치료 가능한 예 2) 발치를 요하는 예 라. 하악관절탈구	약 40일 이상 약 50일 이상 약 28일 이상 약 10일 이상 약 28일 이상 약 28일 이상 약 21일 이상	1. 경조직 가. 악안면골 골절 1) 단순골절 2) 복잡골절 3) 팔이식을 요하는 예 나. 치아파절 1) 발치를 요하는 예 2) 발수를 요하는 예 3) 치관수복만을 요하는 예 다. 치아탈구 1) 고정치료가 가능한 예 2) 발치를 요하는 예 라. 하악관절 탈구	약 40일 이상 약 50일 이상 약 50일 이상 약 28일 이상 약 10일 이상 1일 이상 약 28일 이상 약 28일 이상 약 21일 이상	자구삽입 신 설 자구삭제 자구삭제 신 설 자구삭제 자구삽입 자구변경 신 설
2. 연조직 (치수, 구개, 설, 혀 부, 이부) 가. 불용합치료 가능한 예 나. 용합치료를 요하는 예 다. 성형수술을 요하는 예 (결손시) 1) 치은결손시 2) 설결손시 3) 구개결손시 4) 혀부결손시 5) 이부결손시	약 7일 이상 약 10일 이내 약 15일 이상 약 30일 이상 약 3개월 이상 약 3개월 이상 약 3개월 이상	2. 연조직 가. 용합치료가 필요치 않은 예 나. 용합치료를 요하는 예 다. 연조직이식을 요하는 예 3. 유치손상 가. 영구치 맹출 6개월이내의 유치손상은 (치료목적으로도 발치를 하기 때문에) 연조직 손상에 준한다.	약 7일 이상 약 7일 이상 약 21일 이상 약 7일 이상 약 7일 이상 약 21일 이상	자구변경 신 설 신 설

◇참고사항◇

치아파절 : Enamel파절 (WHO classification 873.60)

Crown fracture without pulp involvement WHO 873.61

Crown fracture with pulp involvement (WHO 873.62)

치료 : (1) pulp capping

(2) pulpotomy

(3) pulpectomy

(4) 발수를 요하는 예

Root fracture WHO Classification 873.63

치료 : 위치에 따라 (1) 발치 (2) 고정 8~12주동안

Tooth luxation WHO 873.66 a) 고정가능한 예

Intrusion or extrusion (WHO classification 873.67)

Avulsion of the tooth (WHO 873.68)

치료 : (1) Endo하고 고정 6주~8주동안

(2) 고정하고 (6주~8주) 그리고 3~7일 간격으로 3회, 2주후에 근관치료

치아파절 : 발수를 요하는 예 (crown파절)

내원 1일째 : 발수 및 근관확대형성, 내원 2일 (3~7일후) : 근관확대형성, 내원 3일 (3~7일후) : 근관충전, 내원 4일 (7일후) : post & Crown Restoration with Resin composite 또는, 내원 4일 (7일후) : post & Jacket crown. 이때는 Impression taking하고 2~3일후 Jacket crown

치아탈구 : a) 고정가능한 예

1. 고정 : 6주~8주동안

2. 치수생활력검사 : 6주~8주동안

3. 치수과사 확인되면 (보통 절반이상의 예에서 일어남) 1/2 Endo시작하며 Endo치료는 3~7일간격으로 3회에 끝냄